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68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김민석·박희승·송재봉

윤준병 · 정동영 · 서미화

안태준 • 박지원 • 이원택

위성락 · 임호선 · 이연희

김우영 · 김기표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 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 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광고·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권리보호"를 "권리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방지하기"를 "방지하고, 학대행위 정보의 공유로 인한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한다.

-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이하 "학대행위"라 한다)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 2.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동물학대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대행위
-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제44조의2제3항 중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된 경우
- 2.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 3.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제44조의3제1항 중 "침해한다고"를 "침해하거나 제44조제2항을 위반한다고"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로 한다.

6의4.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 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u>권리보</u>
호) ① (생 략)	<u>호 등</u>)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
	(이하 "학대행위"라 한다)를 촬
	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
	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u>시켜서는 아니 된다.</u>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
	호에 따른 노인학대
	2.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동물학대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아동학대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
	<u>대행위</u>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
	<u>항에 따른 장애인학대</u>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③</u>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 <u>제1항에</u> 따른 정보가	<u>제1항 및 제2항에</u>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 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u>방지</u> 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 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② (생 략)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 설>

<u>4</u>
<u>방지</u>
하고, 학대행위 정보의 공유로
인한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된 경우

<신 설>

<신 설>

- ④ ~ ⑥ (생 략)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 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6의3. (생 략)

- 2.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 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 3.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 되어 있는 경우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임의의 역	임시조치)	\bigcirc -
--------------	-------	--------------

- ----침해하거나 제44조제2항을 위반한다고-----
 - ② (현행과 같음)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6의4.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u>
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
부터 제6호의4까지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
지 책임자) ①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 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영
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②・③ (현행과 같음)

복제물을 포함한다)